

# 왜 조정을 하는가?

- I. 어느 경제학자의 질문
- II. 세 개의 조정사례와 몇 가지 통계자료
- III. 조정의 운영원리
- IV. 경제학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황 덕 남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 왜 조정을 하는가?

### I. 어느 경제학자의 질문

1.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법원정책에 관하여 발표를 한 경제학 교수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면서 ‘왜 조정을 강조하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1) 세계은행은 2004년부터 국가별 기업환경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Doing Business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송기간이 전체 조사대상국 중 두 번째로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소송사건이 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2) 판결의 공정성을 항소율로 정의하고 1심판결의 항소율 분석을 해본다면, 주요국가의 항소율과 대비하여 볼 때 비정상적으로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법원의 분쟁해결제도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고, 그 실효성이 불분명함에도 ADR을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2. 이 글에서는 필자가 직접 처리한 세 개의 조정사례를 먼저 소개한 후 몇 가지 통계를 들어 조정의 운영원리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 경제학자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한다.

## II. 세 개의 조정사례와 몇 가지 통계자료

### 1. 세 개의 조정사례

#### (1) 부자간 대여금 청구 사건

##### ① 사안의 개요

아버지(원고)가 아들(피고)을 상대로 결혼할 때 지원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은 대여금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피고가 간단한 답변을 제출한 후 조정센터의 조정에서 회부하였다.

##### ② 조정진행경위

소장의 내용만 본다면, 보통은 부모가 어려운 살림에도 상당한 금액을 마련하여 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였건만 아들 부부는 결혼 후 부모님을 모른 채하고 지내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경제적 조력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을 예측할 것이고, 이런 경우 마음이 아버지 쪽으로 기울고 아들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비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솔직히 필자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조정기일에 참석한 당사자들은 외모부터 필자가 생각하였던 모든 선입견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부자 모두 여유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첫 기일부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양측의 사연을 들었는데, 우선, 원고는 수십억대의 재산가이고, 아들에 대한 소송의 제기는 금전적인 것보다도 아들의 진로선택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는 괜찮은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근무 중이고, 피고 부부의 결혼 후 어떤 사유가 생겨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위 이혼과정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비난하고,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힘들게 근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지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젊은 아들은 부모님의 이혼이 못마땅하여 부모님 모두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화김에 돌려드리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니, 이 사건은 단순한 대여금 청구 사건이 아니라 복잡한 가족 간의 갈등이 얽힌 사건이었다. 원고에게 “대여금청구 부분 말고, 현재 아들과 관련하여 가장 섭섭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더니, 원고는 “며느리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싶은데, 아들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며느리와 손자마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서로 얼굴 마주보기를 거부해하는 양측을 설득하여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조정기일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에게는 처와 아기를 대동하여 출석할 것을 권하였다.

이후 8번의 조정기일을 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가족(피고가 출장인 경우 처와 아기만이라도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대면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아들을 만날 때마다 ‘그 돈 언제 갚을래?’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조정기일이 끝난 후에는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9번의 조정기일 운영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만 반복될 뿐 합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할 수 없이 일단 대여금 사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결정문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가족 간의 복잡한 갈등에서 유발된 오해로 인해 아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무너진 것이 동기로 보인다는 점, 그 동안 양측이 오해를 불식시킬만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점, 원고의 제소가 금전적 이해관계에 터 잡은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섭섭함에서 유발되었고, 따라서 금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하여 부자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조정과정에서 시작된 가족 간 접촉을 지속하여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며 금전적 청구는 그 이후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일단 원고가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장문의 이유를 기재하였다.

### ③ 조정결정 이후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1년에 가까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허탈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결정문을 보고 도대체 어떤 당사자들인지 얼굴 좀 보려고 하였더니 소를 취하하여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결국, 조정은 성공하지 못하였어도 부자간의 오해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 (2)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관리용역계약 사건

### ① 사안의 개요

경영자가 동일한 두 개의 회사가 OO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 아파트 내 피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여, 한 회사는 시설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공사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렌탈료를 받기로 하고, 한 회사는 시설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운영인력을 제공하면서 관리비 및 인건비를 받기로 하였다.

시설운영 2년 경과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진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운영진은 위 계약들이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렌탈료 등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위 두 개 회사의 경영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기도 하여서 시설을 방치할 수 없어 대가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및 관리를 계속하였다. 위 두 개의 회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렌탈료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측은 이 사건 계약체결과정에 위법요소가 있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비용에 기망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모 회계법인의 의견과 다른 아파트 단지의 시설운영 비용의 예를 들고, 위 계약들의 해지를 주장하였다.

### ② 조정진행경위

최초 기일에 양측 의견을 듣고 과거의 비용뿐 아니라 향후 문제도 있으므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거기에 따른 조정안을 준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음 기일에 양측은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어서 모두 관계를 청산할 것을 선호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관계청산에 따른 정산에 관한 의견은 양측 모두 준비하지 아니하였다. 간접적으로나마 조정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상황이었다. 필자는 다시 기일을 정하면서 관계청산 시 렌탈료, 관리비, 인건비 등 정산에 대한 조정안과 아울러 양 당사자들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만료 시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희망하는 계약내용 조정사항도 준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3차 기일에 양측 모두 두 경우에 대한 조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양측의 조정안을 받아 비교해보니 뜻밖에 두 경우 모두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의견일치를

위한 접근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였다. 그런데, 이미 2년은 계약이 이행되었고, 대금 미지급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여 남은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의 반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계약관계 유지를 전제로 협상을 하여 보자고 하였다. 양측 모두 감정의 골이 깊어 계약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조정안은 조정위원의 요구로 준비는 하였으나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약간의 저항이 있었다. 이에 어차피 이 조정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산협상을 하게 될 것인데, 순서상 계약관계 유지 여부가 먼저가 아니겠느냐고 하면서 설득하였다. 양측은 마지못해 일단 협상에 응하였는데, 각각의 항목별로 의견접근을 시도하자 양측 모두 상대방의 조정안에 대하여 의외였는지, 쉽게 절충안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몇 가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1주 이내로 4차 기일을 정하였고,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견해 차이에 대한 조정안과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시점에서, 피고에게 피고측이 당초에 제기한 계약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들은 대부분 피고측 내부의 문제인 것을 지적하자 피고측도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였다.

4차 기일에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유지를 전제로 각 항목별로, 기 이행분(2년분), 경과분(1년분), 남은 기간(2년)에 대하여 양측이 제시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절충안을 제시하여 양측 의견을 물으니 모두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계약관계청산을 전제로 한 정산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3) 자동차 화재원인에 따른 구상금 사건

#### ① 사안의 개요

원고(손해보험회사)는 피고(자동차제조, 판매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을 약 1년 가량 운행하던 어느 날, 귀가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약 15분 정도 지나서 지하주차장 CCTV상 위 차량 본넷에서 불길의 목격되었고, 차량이 전소되었으며 불길이 번져 주차장 천정에 설치된 생활용수관까지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화재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및 용수관 복구비용을 지급한 후 위 화재는 차량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 비용

의 구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사고는 방화를 포함한 차량외부적 요인에 의한 화재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양측 모두 차량화재 전문가인 대학교수로부터 위 화재사고에 관한 분석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② 조정진행경위

조정준비를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양측이 제출한 두 개의 분석의견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조정위원으로서는 모두 논리적인 모순을 찾기 어려웠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였다. 조정기일 진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화재전문가를 찾아보았는데, 단 1명이 있었다.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일단 조정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사건은 양측의 의견대립이 첨예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원에 이미 위촉되어 있는 조정위원 중에는 적당한 전문가가 없으므로 민사조정법 제10조의 2를 활용하여 보기로 하였다.

민사조정법 제10조의 2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또는 제10조 제1항의 조정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양측이 합의하는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화재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을 확인하여 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장 적격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1차 조정기일에 참석한 양 회사의 대리인으로부터 양측의 입장을 듣고, 화재잔존물 중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품을 원고회사가 보관중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양측 대리인에게 양측의 보고서나 양측 대리인의 진술이 모두 옳은 것 같은데 결론이 서로 다르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으로 생각된다는 솔직한 심정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화재전문가를 추천받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구하였다. 양측 대리인 모두 흔쾌히 승낙하였다. 이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추천된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지급문제를 의논하였는데 양측 모두 이 부분에 대하여도 흔쾌히 승낙하였다. 차회기일은 일단 지정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이 추천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정하기로 하였다.

1차 기일진행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사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조정위원 추천을 부탁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통화를 하여 두었다.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화재전문가를 추천하는 답신을 받게 되었다.

답신을 받은 후, 추천된 전문가와 통화를 하면서, 조정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 가능한 일정을 확정하고, 사안의 개요를 설명한 후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추천된 전문가는 양측이 제출한 분석의견서 및 원고측이 보관중인 화재잔존물을 검토하고, 양측의 분석의견서를 작성한 교수들과도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 대리인에게 추천된 전문가를 특정하여 조정위원으로 지정함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화재잔존물 검토를 위한 일시와 장소, 참석이 가능한 조정기일을 특정하고, 양측이 제출한 분석의견서를 작성한 교수들을 조정기일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나머지 조정위원 1인은 법원에 이미 위촉되어 있는 조정위원들 중 변호사인 조정위원으로 지정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차 조정기일로부터 약 한 달 반 경과한 날짜에 2차 조정기일을 열었고, 전문가 조정위원은 조정시간 전, 원고측 보관장소에서 양측 관련자들의 참석하에 화재잔존물을 검토하였다.

2차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회, 양측 대리인과 담당 직원, 분석의견서를 제출한 교수들이 참석하여 화재원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소훼된 자동차 전체가 남아있다면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나, 원고측이 발화지점이라고 하여 보관중인 잔존물만으로는 이 부분이 화재의 원인일 수도 있고, 화재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전문가 조정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일반적인 자동차화재의 원인과 차체결함보다는 방화인 경우가 더 많음을 설명하였다. 화재 잔존물에 대한 분석과 화재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양측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보였고, 구상금 지급 비율에 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양측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일정한 비율로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 2. 몇 가지 통계

(1) 우리나라와 일본의 2008년 민사분쟁신청사건의 수, 그 처리 건 수, 상고심 사건의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국과 일본의 민사분쟁신청사건 비교

구 분	민사소송 제기건수	조 정 신청건수	1심민사본안 처리 건 수	판결건수	조정화해 건 수	상고심 접수건수
한 국	1,259,031	9,216	1,284,430	850,643	83,082	15,564(민사·가사·행정)
일 본	773,245	150,161	746,825	247,825	137,811	4,978(민사·행정)

\* 인구수는 2007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약 2.7배임

(2) 필자가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3년 동안 서울법원 조정센터에서 처리한 사건들의 처리내역과 위 사건들 중 조정불성립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조정에 실패하여 소송으로 회부된 사건들이 재판부에서 처리된 결과를 추적한 결과는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조정사건 처리내역

기 간	총처리건수	성공건수		기 타	실패건수	
		조정성립	결정확정		불성립	이의신청
2010.5.1.~2011.4.30.	547	92.5	122.5	58	122	152
2011.5.1.~2012.4.30.	504	67	120.5	47	125	144.5
2012.5.1.~2013.4.30.	600	77	136	54	150	183

<표 3> 실패사건의 소송회부후 진행내역

기 간	총실패건수	회부한 심급종결	판결선고	판결전종결	판결전 종결비율
2010.5.1.~2011.4.30.	274	252	156	96	38.10%
2011.5.1.~2012.4.30.	270	235	166	69	29.36%
2012.5.1.~2013.4.30.	333	292	189	103	35.27%

### Ⅲ. 조정의 운영원리

#### 1. 조정과 소송에 관한 두 가지 비유

##### (1) 비유 1

분쟁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비유하여 볼 수 있다. 우리는 골목길에서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는 중앙선을 의식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동차를 운행한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는 중앙선을 그어놓고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보려고 할 수 있을까? 사고의 처리과정도 당연히 운행당시를 전제로 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지, 갑자기 고속도로처럼 중앙선을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이 제기된 사건 중 상당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전제로 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리라는 전제하에, 상호의 입장과 처지를 반영한 조건을 정하여 행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대로’, ‘판사의 판결에 따라’ 판단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 (2) 비유 2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급작스런 사고로 인한 외상 등을 제외하고는 아프다고 곧바로 외과수술대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치열하게 ‘법대로 판결’을 외치던 사람들도 이러한 설명에는 일단 수긍을 하고 잠잠해진다. 분쟁발생의 경우에도 분쟁발생의 원인과 향후 예후에 대하여 한번쯤은 객관적인 제3자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진단과 처방을 받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2. 앞서 든 사례들을 이러한 비유에 비추어 본다면, ① 부자간 대여금 사건의 경우 전혀 법률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시작되었던 일이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갑자기 고속도로처럼 중앙선을 그어놓고 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외과수술대에 올라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와 비슷할 것이다. ②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관리용역 사건의 경우, 그나마 계약서 등 법률적인 판단과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계약서에 따라 법대로 판단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재판에서 승소하든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어야 하는 외과수술부터 하고 보지는 사건이었다. ③ 자동차 화재 구상금 사건은 예상치 않은 화재의 발생으로 분쟁이 야기되었지만, 모두 각자의 자료와 판단만을 가지고 외과수술을 하려 들었던 사건이었다.

3. 위 사건들이 모두 소송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양측 모두 승복할 수 있었을까? 분쟁의 발단이야 어찌되었든지, 판결에서 어느 편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이 있었을 사건이고, 양측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표 1>의 통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치게 많은 1심판결의 수를 더 늘리고, 상급심 법원의 부담마저 가중시켰을 것이다.

4. ‘조정은 신속하고 저렴한, 판결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정의 운영원리를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다.

(1) 조정은 분쟁해결의 원칙적 과정으로의 환원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협상, 조정, 중재, 소송의 단계적 분쟁해결이 필요함에도 조정을 외면한 채 민사소송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판결일변도의 경향을 보여오던 것을 위 원칙적 과정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조정을 판결 대체적(alternative) 분쟁해결 방법으로 보던 것을 이제는 적절한(appropriate) 분쟁해결방법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정은 자율적 분쟁해결방법이다. 우선, 분쟁당사자들이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들의 선택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분쟁은 소송의 쟁점뿐만이 아니라, 양측의 관계, 감정상태, 소 제기의 동기, 양측의 경제상태, 집행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되어 있고, 때로는 이러한 주변사정들이 소송의 쟁점보다 더 큰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소송의 쟁점만이 아니라 양측의 감정상태부터 여러 가지 분쟁발생경위 및 향후 예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거론하여 분쟁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양측의 입장과 처지를 반영하여 스스로 정리하게 함으로써 양측에 내재한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은 적절한(appropriate) 분쟁해결방법에서 나아가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amicable) 분쟁해결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경유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사건의 성과분석에 있어서도 조정성공율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판결에 앞서 조정을 경유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분쟁에 대하여 해결자체보다는 분쟁해결방법의 전환을 통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IV. 경제학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1. 서두에서 언급한 경제학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명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조정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행위 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처럼, 분쟁발생 시에도 그 해결 절차나 내용을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선택하는 절차이다.

2.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자간 대역금 청구사건의 경우처럼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갈등의 해결은 소송에 의한 판결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판결에 대한 불복은 그 비율을 따지기 전에, 절대적인 사건 수가 문제된다.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관리용역계약 사건 또는 자동차 화재원인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의 경우처럼 조정은 분쟁을 그 발생초기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복잡한 관련분쟁을 일시에 해결하여 1심판결의 수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비록 항소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상급심 사건의 수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4. 조정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실효성이 확보되고,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민들이 분쟁발생 시 찾아가는 기관은 법원이 절대 다수인 듯하다. 그렇다면, 법원외 조정기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분쟁이 모여있는 곳에서 조정을 정착시키려는 시도, 즉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법원에 의한 조정은 그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속성 및 법관의 역할 등에 비추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적어도, 법원과 관련된 조정기관에서의 법원에 의하지 아니한 조정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통계들에 비추어 본다면, 조정을 거친 사건은 그 60% 정도가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거나 조정에 실패했더라도 소송으로 회부된 후 판결 전에 종결되므로 그 실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센터에서의 조정이든, 일반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든 법원조정에 국가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5.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앉아 협상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조정인의 개입 하에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정은 사회의 갈등지수를 낮출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또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